#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동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76

발의연월일: 2024. 7. 2.

발 의 자:유동수・서영교・조 국

박지원 • 이기헌 • 박상혁

허종식 • 박민규 • 복기왕

이훈기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,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. 경로당에 지원된 보 조금이 남으면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.

그런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보조금을 절약하여 쓰신후, 지원금이 남았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보조금 유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 특히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부식비 및 취사에 이용되는 비용을 양곡구입비등의 보조금을 절약해 사용하는 사례가 많음.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운영비로 쓸 수 있는 항목에 부식 구입비 및 취사용 연료비를추가하고, 경로당에서 보조금을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, 운영비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하며, 자체 절감한 비용 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용에 재량권을 경 로당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7조의2).

#### 법률 제 호

#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2제1항 중 "양곡(「양곡관리법」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)구입비"를 "다음 각 호의 운영비(이하 이 조에서 "운영비"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양곡(「양곡관리법」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) 및 부식 (副食)의 구입비
- 2. 냉난방 비용 및 취사용 연료비
- ③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된 구입비 또는 제2호에 따라 지급된 냉난방 비용 및 취사용 연료비를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에는 절감한 비용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절감한 비용을 운영비로 사용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용명세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37조의2(경로당에 대한 양곡구 제37조의2(경로당에 대한 양곡구 입비 등의 보조) ① 국가 또는 입비 등의 보조) ① -----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(「양 -----다음 각 곡관리법 | 에 따른 정부관리양 | 호의 운영비(이하 이 조에서 곡을 포함한다)구입비의 전부 "운영비"라 한다)-----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1. 양곡(「양곡관리법」에 따른 <신 설>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) 및 부식(副食)의 구입비 <신 설> 2. 냉난방 비용 및 취사용 연료 月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<삭 제>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 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③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<신 설> 률」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경로당이 제1항제1호에 따 라 지급된 구입비 또는 제2호

에 따라 지급된 냉난방 비용

및 취사용 연료비를 자체 노력

으로 절감한 경우에는 절감한

비용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절감한 비용을 운영비로 사용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용명세서를 보건복지부장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